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743호

2019년 8월 28일 (수)

차 례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19-1353호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공 고

○ 파주시 공고 제2019-1365호 부의안건 공고 ····· 3

회람									

발 행 : 파 주 시

파주시공고 제 2019 -1353 호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관련 사항(안 제3조 ~ 안 제11조)

4. 개정조례안: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17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의회법무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71 / FAX 031-940-409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파주시 공고 제2019-1365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2019. 9. 3. ~ 9. 11.)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안건

-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1차

2019. 8. 28.

파 주 시 장